

[사법농단 ISSUE PAPER ①]

#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2018. 6. 26. (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목차>

### 1. 사안의 개요

###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나. 3차 보고서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문건

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문건

마. 현안관련 말씀자료 [71] 문건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82] 문건

1) 임종헌 꼬리자르기

2)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 3. 사법농단의 행태 - 특조단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나. 3차 보고서 [80]번 문건(BH 설득방안) 12쪽, 정부 장관급 인사추천 협력 부분

다. VIP보고서 [165]번 문건

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358]번 문건

### 4. 평가

가. 재판거래 의혹의 아킬레스건, 상고법원 - 덮어두고 싶은 고위법관들

나. 상고법원에 올인한 이유

다. 재판개입 직권남용죄의 강력한 범행동기, 상고법원 - 파헤치고 싶은 국민

#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 1. 사안의 개요

2017. 2.부터 시작된 판사 뒷조사 문건과 관련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에 의하여 공개된 문건들을 통해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그 한 복판에는 상고법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도대체 상고법원이 무엇이길래’ 재판거래까지 시도했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원세훈 사건, 전교조 사건, 통진당 사건 3가지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부터 재판 개입이 이루어져 온 흔적을 담은 문건들이 다수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 문건들에도 여지없이 상고법원이 등장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2014. 6.경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이하 ‘자문위’라 함)가 대법원장에게 상고법원 설치를 건의하면서부터이다. 외관상으로는 자문위가 건의한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실질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자문위를 통해 상고법원을 공론화한 셈이다. 위 자문위는 2013. 7.경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하여, 이미 상고법원을 염두에 두고서 위촉된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2014. 9.경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4. 10.경 국회 법사위 주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상고법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상고법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당시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검찰은 상고법원안에 소

극적인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다보니 법원행정처에서는 당초 법안 발의때부터 법무부를 통한 정부입법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 대신 2014. 12.경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을 통해, 여야 의원 168명의 동의를 얻어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상고법원안’이 담긴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대표발의된 것이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고법원안이 발의되자, 이후 법원행정처는 마치 상고법원 제도가 마치 금방이라도 시행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가 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법원 출입문, 지하철 등에 국민혈세를 낭비해가면서까지 상고법원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고위 법관들은, 그 시점에서는 법률심사권,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앞에서 ‘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2년 정도 후에는 언제든지 일선 법원으로 복귀하여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될 재판장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법원장들까지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상고법원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해 달라고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법원장은 해당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어서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평상시에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후원금 감독업무까지 하고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였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사법부의 대변력을 가져올 만한 중요한 개정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부린 탓에 곧바로 민변 등 시민단체와 법무부, 검찰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상고법원안은 얼핏 보면 상고심 절차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 상고법원의 판사들이 사실상 최종심을 담당하게 됨

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대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게다가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대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하지, 상고법원 판사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였다.

상고법원은 당초 이러한 원초적 결함 때문에 2015년 한 해 동안 국회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대 국회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였던 2015. 12. 정기국회를 마감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한편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올린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안 통과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 및 정치권의 동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하여 그 시기, 방법 등을 조율해왔다.

그리고 또한 청와대를 설득하고자 청와대의 가장 큰 관심 재판이었던 원세훈 사건과, 그 외에 전교조 사건,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해왔다.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시            | 법 원  | 청와대(BH), 정치권   |
|---------------|--|--|
| 2014. 6.      | 자문위, 상고법원 건의   |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작성 시작   |
| 2014. 8. ~ 9. | 원세훈 1심 재판부가 이메일 첨부 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쪽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59]번 문건 작성 (8. 23.)<br>서울고등법원 민중기 재판장의 전교조 효력정지 인용결정(9. 19.)<br>원세훈 1심 판결 선고(9. 11.)<br>상고법원 공청회(9. 24.) | 김영한 비망록(9. 6.)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찾아서 길을 열어도록(상고법원)”<br>김영한 비망록(9. 22.) “대법원X, 고법 X 돌연변이, 대법원 재판 받고 싶은 희망 ⇒ 위헌소지, 대법원 궁여지책, 간단한 문제 아님.” |
| 2014.         | 전교조 사건, 재항고 인용시 상고법원   | 김영한 비망록(11. 25.)“상고법원 대  |

|               |   |  |
|---------------|---|--|
| 11. ~ 12.     | 입법추진에 이득될 것이라는 취지의 [151]번 문건 작성(12. 3.)<br>홍일표 의원, 상고법원안 발의(12. 19.)  | 9.7 발족-대통령 임명권 배제 민주적 정당성-의원입법(꼼수)”  |
| 2015. 2.      | 원세훈 2심 판결 선고(2. 9.)<br>발상을 전환하면 오히려 이니셔티브될 수 있다는 [61]번 문건 작성(2. 10.)<br>통진당 기획소송 [75]번 문건 작성(2. 12.)  | BH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임명됨  |
| 2015. 3. ~ 4. |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번 문건 작성 (3. 26.)<br>이완구, 성완중 사건 관련, 원세훈 사건 등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건의 처리방향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204]번 [152]번 문건 작성               |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와 전면전 선언’ 대국민 담화(3. 12.)<br>성완중 리스트 작성 후 자살 사건(4. 9.)국회 법사위, 상고법원 공청회(4. 20.)                                   |
| 2015. 6. ~ 7. | 전교조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6. 3.)<br>원세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7. 16.)<br>BH 설득방안 [80]번 문건 및 말씀자료 문건 등 작성(7. 28.경)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정치현안에서 무게중심이 BH로 쏠려있는 상황   |
| 2015. 8.      | 양승태 대법원장, VIP 독대(8. 6.)<br>임종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8. 7.)<br>한명숙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판결선고(8. 20.)<br>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358]번 문건작성(영장항고제 등 법무부 빅딜방안 등) |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게 VIP 지시사항 전달 (8. 10.)<br>그러나 정작 법무부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빅딜안 등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br><br>국회 법사위 1소위, 상고법원 반대 기류 강하여 논의진척 없음. |
| 2015. 11.     |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번 문건 작성(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VIP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안 제시, 11. 19.)  | 국회 법사위 1소위 위원장 이한성, BH와 법무부의 반대로 인해 상고법원안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안건 상정 거부.   |

## 2. 각 조사보고서<sup>1)</sup>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 가. 1, 2차 보고서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에서는 상고법원 자체와 관련된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하여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이단희 판사의 사표제출 과동으로부터 시작된 판사 사찰 문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주된 이슈였기 때문이다.

물론 2차 보고서 일부에, 상고법원과 관련되어 2015년경에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방안’ 문건 등 4건에 관한 분석은 존재한다(2차 보고서, 27쪽~30쪽). 그러나 이 부분 역시, 핵심은 상고법원 자체의 이슈보다는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사찰과 동향분석 등을 다룬 문건이다.

그런데 2차 보고서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문건이 마지막 항목에 등장했었다. 2015. 2. 10.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 그것이다(2차 보고서, 33쪽). 여기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한다는 표현이 있고, 끝부분에 ‘상고법원 관련한 중요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심지어 스스로 역풍을 우려하는 표현까지 있었다. 참고로 이 문건은 원래 ‘김동진’, ‘동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던 중 추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원세훈 사건 재판부의 동향’에 관한 문건까지 함께 추출된 것이다.

그러하기에 추측건대 2차 조사위 내부에서는, 이 문건의 성격이 기존의 판사 사찰 등과 전혀 다른 차원인, ‘재판의 독립 침해’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라서

---

1) 이하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1차 조사위’로, 1차 조사위의 조사보고서를 ‘1차 보고서’로, 추가조사위원회를 ‘2차 조사위’로, 2차 조사위의 조사보고서를 ‘2차 보고서’로, 특조단의 조사보고서를 ‘3차 보고서’로 각 약칭한다.

이를 포함시켜서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차 조사위는 결국 이 문건을 포함시켰다. 그 덕분에 이 문건의 내용은, 당시 언론을 통해 다른 판사 사찰 부분보다도 더 크게 이슈화되었다.

## 나. 3차 보고서

그리하여 특조단은 임의 검색어로 ‘원세훈’ 외에도 ‘상고법원’을 추가하여 상고법원 관련 문건 여러 개를 추출하였다(3차 보고서, 6쪽). 그럼에도 이를 독립된 항목으로 정하여 재판거래, 재판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10번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이 뚜렷한 문건들’ 항목 편에 다른 문건들과 함께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하 기초실이라 함)에서 2015. 3. 26. 작성하였다. 이에 관하여 3차 보고서 169쪽에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위 문건의 5쪽 부분인 아래 내용을 제시하였다.

4.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 ▣ 대상자별 성향과 관심사, 정치적 입장, 특보단 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 수립
- ▣ 이병기 비서실장
  - (중략)
  - [HOW]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등 강조
    - (중략)
    - 주요 관심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

- ▣ 최대 관심사 ⇨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
  - (중략)
  - ▶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하여 4. 15.까지 결정 보류 요청
  -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013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 (중략)
- ▣ 원세훈 사건
  - ▶ 적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3차 보고서, 169쪽〉



그러나 위와 같은 특조단의 분석은, 명백히 위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과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상고법원 재판거래 의혹을 은폐한 것이다. 특조단은 아마도 위 박스 안에 있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항고심에 대하여 4. 15.까지 결정보류 요청’이라는 표현 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분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밑에 기재된, 일제강제징용 사건에 대하여는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고, 원세훈 사건에 대하여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박스안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병기 비서실장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기 보다는, ‘법원행정처에서 먼저 이병기 비서실장의 관심사인 재판을 파악, 예상’하여 나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위 박스안의 문구 자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위쪽 상단의 표현들에 주목하여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즉 ‘4. 구체적 접촉·설득방안’으로서, 이병기 비서실장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인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보듯이 위 문건의 검토배경 부분을 보아도 그러하다.

**1. 검토 배경**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VIP의 몫 ⇨ **BH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
- 상고법원 입법은 **CJ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의 가장 중차대한 추진 과제 ⇨ ∴ **입법 실패는 ① 대외적으로 사법부 위상 추락, ② 대내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 초래**

〈3차 보고서 [79]번 문건, 1쪽〉

그렇다면 위 문건의 주된 의의는,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2015. 8. VIP 독대 이전인 2015. 3.경 무렵부터 이미, 상고법원 설득을 위하여 특히 정권에 치명적인 원세훈 재판 등에 대한 협조약속을 통한 BH와의 재판거래를 계획하여 왔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하던 그 시기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의혹들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최초의 문건인 셈이다.

그럼에도 특조단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덮어버린 채, 마치 이병기 비서실장이 재판에 관한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양 왜곡시켰다. 이러한 특조단의 기본적인 태도는, 아래 설득방안 문건 등에 대한 분석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 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번 문건

이 문건은 기초실에서 2015. 7. 28. 작성, 보고된 것인데, 이에 관하여 특조단은 보고서 172쪽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BH 설득전략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이 뚜렷이 있다며 ‘원세훈 재판’ 부분(위 문건의 34~35쪽)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재판거래, 재판개입으로까지 나아갔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조사는 생략하였고, 문건의 원문도 공개하지 않았다.

### IV. 구체적 설득 전략

- 사전 고려 사항
  - ①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 적극 활용
    - ❖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 ⇨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
    - ❖ 특히,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원세훈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BH 관심 대상에서 완전 소진되지 않은 상태

<3차 보고서 [80]번 문건, 34쪽>

여기에는 비록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이라는 완곡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미 최소한 2015. 2.경부터 아래에서 보듯

이 ‘원세훈 재판’을, 상고법원의 설득 소재로서 재판거래를 계획하였고, 나아가 구체적인 재판개입까지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첫째,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자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처음부터 원세훈 재판을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에 필요한 핵심적인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① 2015. 3. 26.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에서, 상고법원 설득을 위해 BH 이병기 비서실장을 통한 재판거래를 계획하면서 그 대상으로 원세훈 재판을 공식적으로 명시하였다.

② 2015. 3. 15. 작성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번 문건과, 2015. 4. 12. 작성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번 문건에 따르면, ‘원세훈 재판’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건처리 방향과 시기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3차보고서 [152]번 문건의 7~8쪽, 16~17쪽).

● 관심 사안의 적절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

<3차 보고서 [152]번 문건, 17쪽>

사법행정담당 기구에 불과한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이라는 매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개별 재판의 사건처리방향과 판결시기조차 검토하면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2) 참고로 위 문건 중 정권에 협력한 판결 사례에는 원세훈 재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당시 원세훈 사건이 증거능력 부정으로 인한 파기환송이라서 여전히 실체적 판단이 남아있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해당 문건에서는, 위와같이 ‘IV. 구체적인 설득전략의 사전 고려사항’ 편에서, VIP 독대를 할 때 원세훈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기로 계획한 것이다(3차보고서 [80]번 문건, 34쪽).

둘째,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재판 자체에 관하여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 ① 항소심 재판의 선고 전달인 2015. 2. 8.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번 문건에서는, ‘만일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BH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므로 상고법원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선고하여 BH의 불만, 오해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 ② 항소심에서의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5. 2. 9. 작성하여 다음날 보고한 ‘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보고’ [362]번 문건에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선고된 주된 원인이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점과,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분석하였고, 이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까지 전달하였다.
- ③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15. 2. 10.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59]번 문건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으로부터 ‘전원합의체 판결로 신속히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끝 부분에는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수도 있음. 상고심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한 고비를 넘길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역풍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 ④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재판 챙기기, 재판개입은 2015. 7. 16.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이후, 환송심에서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 2015. 10.경 작성된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방향’ [60]번 문건 마지막 부분에는, ‘재판장, 주심판사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란 문구가 있다. 여기서 ‘재판장’은 당시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김시철 고법 부장으로서,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편파적인 재판진행으로 심리를 2017. 2. 자신의 인사이동 때까지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문건 작성자는 서울고등법원 모 판사로 되어 있으나, 법원행

정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이른바 거점법관으로서 김시철 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일 것으로 의심된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이는 단순한 유화적 접근 소재가 아니라 오히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핵심적으로 원세훈 재판 1심부터 꼼꼼한 개입을 통해 최대한 VIP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재판거래를 계획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 마. 현안관련 말씀자료 [71]번 문건

이 문건은 위 [80]번 설득방안 문건의 7~12쪽에 기재된 ‘정부 운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사례’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만든 것이다. 또한 다시 3~4일 후에 같은 내용으로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71]번 문건으로 만들었는데, 다만 이때에는 당시 선고되지도 않았던 발레오만도 사건<sup>3)</sup>의 사건번호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법원 도입의 시급성, 상고법원 판사 임명절차 재설계, 입법추진절차 해명, 사법한류 추진 등 아이디어 제공 부분(13~32쪽)은, 별도로 그 무렵 ‘VIP보고서’ [165]번 문건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특조단은 정작 원래의 모태가 된 위 설득방안 문건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단지 ‘현안관련 말씀자료’ [70]번 문건만을 공개하였다.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어서, VIP 독대시 활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임종현 차장의 변명을 타당하다고 단정지은 나머지 이에 대한 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한 것이다(3차 보고서, 175쪽).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이 의도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몸통으로서 주도한 상고법원 재판거래 의혹을 은폐하고, 임종현 차장으로 꼬리를 자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첫째, 원 자료인 설득방안 문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BH 설득방안’으로 제

3) 발레오만도 사건은 상고심에서 2016. 2. 19.에서야 선고되었는바, 협력 사례로 기재한 바와 같이 과거 환송되었다.

시되었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상고법원에 대한 VIP 우려를 합리적으로 불식시키기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국정철학이 VIP와 유사하다는 등을 강조하기로 하는가 하면(3차 보고서 [80]번 문건, 33쪽),

**나. 우려의 합리적 불식**

■ **[능동적 요소] 국정운영 및 사법행정의 지향점 같음**

- CJ 임기 하반기 사법부 운영 기본방향은 VIP의 임기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지향점이 동일할 수 밖에 없음
- ①**국정 철학 유사함**
  - ∴ 신중한 보수로서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지향하고, 청렴과 헌신을 강조하는 면 등 기본적인 국가관과 국정 철학 유사함
- ②**現 VIP 임명 대법관이 점차 대법원의 다수를 점하게 됨**
  - ∴ 현재 3명인 現 VIP 임명 대법관이 점점 증가하여 2017. 6.에는 7명으로

<3차 보고서 [80]번 문건, 33쪽>

VIP와의 개별면담 자리에서 언급할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기재되어 있을 정도였다(3차 보고서 [80]번 문건, 36쪽)

● **CJ**께서 **VIP**와의 개별 면담 자리에서, 먼저 ①**정부와 사법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바람, 국정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 협조 의사 등을 피력하시고, ②'경제도약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분쟁해결시스템**

<3차 보고서 [80]번 문건, 36쪽>

이처럼 해당 문건 어디에도 여당 국회의원 설득 부분은 전혀 없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원래의 문건 전체 취지를 무시하고서, 단지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만든 말씀자료만을 가지고 여당 국회의원 설득의 자료였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실제로도 당시 여당 국회의원 설득의 필요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왜

나하면 여당 국회의원 중 검찰 출신인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개인적인 소신보다 법무부, 검찰의 조직적인 반대 입장에 따른 것이었기에, 그러한 재판협력 사례를 들어 설득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 외의 나머지 여당 국회의원들은, 상당수가 이미 상고법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태였기에, 굳이 그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없었다.

둘째, 특조단은 언론을 통해서, 마치 우병우 민정수석이 배석해서 방해하였기에 재판협력 사례를 설명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VIP 독대 이후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다른 문건인 ‘VIP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358]번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이 문건 1쪽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는 2015. 8. 6. 면담 당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표명과 향후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기에 상고법원 입법추진 환경에 의미있는 전환점이 도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조단 역시 위 문건의 내용을 다른 보고서의 각주에 기재하기까지 했었다(3차 보고서 156쪽). 그런데도 특조단은 의도적으로 이 문건을 상고법원 관련 문건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나아가 특조단은 기자들에게 양 전 원장이 오찬 회동에 가져간 문건은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다룬 다른 문건이었다고 해명하였다. 물론 당시 가져갔다는 ‘VIP보고서’ [165]번 문건에는, 정권협력 재판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법원 판사 임명절차 재설계 등 부분만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당초 작성된 BH 설득방안 문건을, VIP보고서 문건과 말씀자료 문건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작성한 상태였으므로, 위 ‘VIP보고서’ 라는 문건 외에 말씀자료 문건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적절하다.

셋째, 설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오찬 회동에 해당 문건을 들고 가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현안관련 말씀자료’는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로 하여금 청와대, 국회 법사위 등에서 사법부 현안을 보고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작성하는 문서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자료라는 것을 일회성으로 왔다갔다 하는 문서로서 잠깐이라도 읽어보았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BH 설득방안 문건에서 1단계로 이명재 민정특보와의 면담을 하기로 한 주체는 법원행정처 처장이고, 2단계로 VIP를 독대하기로 한 주체는 대법원장이다(3차보고서 [80]번 문건, 36쪽). 그러하기에 위 말씀자료 문건은 당연히 1단계, 2단계 면담의 추진 주체인 처장,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특조단은 ‘위 말씀자료 문건이 아예 처장이나 대법원장에게 보고조차 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결론지은 것이다(3차 보고서, 176쪽).

##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82]번 문건

### 1) 임종헌 꼬리자르기

이 문건은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특조단은 내용을 나열한 다음 단순히 상고법원 입법추진의 컨트롤타워인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것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3차 보고서, 176쪽). 나아가 특조단은 결론 부분에서도, 무리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의 책임을 실무자에 불과한 임종헌 차장의 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3차 보고서, 182쪽). 그로 인해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행정처 처장에 대하여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법부 최고 책임자 윗선인 몸통에 대하여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BH 대응전략 문건, BH 설득방안 문건을 보더라도, 상고법원 추진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이라는 점, ‘입법 실패시



사법부의 위상추락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리더십 상실로 이어진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2014. 6.부터 2015. 12.까지, 사법부의 온 역량을 집중해서 상고법원 입법에 매달려 왔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VIP 독대를 하면서 재판협력 사례를 제시하며 재판거래까지 했던 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면서까지 상고법원 홍보예산을 투입했던 점,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현재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몸통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 2)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특조단은 결론 부분에서, 이번 사태의 첫 번째 원인으로 상고법원의 무리한 추진을 들고 있다. 또한 그로인해 청와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법 과정에서 협조를 얻어야 하는 동반자로 보고 재판의 결과를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거나 진행중인 재판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한 점도 인정하고 있다(3차 보고서, 186쪽 중간).

그러나 정작 문건의 분석·조사 과정에서는,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 분석을 생략하여 버렸고, 관련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핵심적인 재판거래의 수단이었던 원세훈 재판에 대한 개입의혹에 대하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결국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이후에야 선거법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대법원이 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을 이유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것이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특히 이 문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의 돌출판결 방지 역할 수행’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러한 사건의 대표격인 원세훈 사건 등에 재판개입을 해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사법부가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표현을 통해,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재판거래를 해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 그러나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3차 보고서 [82]번 문건, 5쪽>

그럼에도 특조단은, 이러한 표현들에 대하여 단지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라는 식으로, 실제 재판개입, 재판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 조사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외관상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것이다.

### 3. 사법농단의 행태 - 특조단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 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첫째, 위 문건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마치 국정원 등 정보기관처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풍문성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병기 비서실장의 경우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정원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음에

도 항상 경청하여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다'라거나(문건 4쪽), 윤상현 정무특보에 대하여 '의원들 사이에서 사람이 변했다는 평이 돌고 있음'이라는 식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재하고 있다(문건 7쪽). 이러한 정보들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직접 들어서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규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 아니므로 유력인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권한이 없고, 이에 관련되어 배정된 예산도 없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이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일제강제징용 사건 관련하여, 위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 고등법원에서 1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아 새로운 쟁점이 없는 상태임에도, 그 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무려 지금까지도 5년 가까이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게 8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법원 캐비닛에서 사건이 한 없이 잠자는 동안, 당초 소송에 참여한 9명 중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현재 생존자는 단 두 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병기 실장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항고심 보류 요청과 일제강제징용 사건에 관한 부적절한 재판개입 요청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협조 노력, 공감 의사를 피력하였다. 즉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자, 재판의 선고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등으로라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거나, 나아가 실제로 그러한 개입이 있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서 철저한 수사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 나. 3차 보고서 [80]번 문건(BH 설득방안) 12쪽, 정부 장관급 인사추천 협력 부분

위 기재에 의하면, “현 정부 아래에서 여러 고위 법관이 정부 장관급 인사로

임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정보 전 국민권익위원장(전 서울중앙지법원장)·황찬현 전 감사원장(전 서울중앙지법원장)·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법원장)·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예시로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법관의 행정부 관료 진출에 대한 사법권 독립 저해, 삼권분립 원칙 침해 등 우려 섞인 시각에도 불구하고→유능한 법관들이 VIP(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참여해 역량 발휘하는 것도 전체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 깊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에서 장관급 인선에 최대한 협조”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경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 여러 차례 현직 고위 법관들이 행정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때마다 법원행정처는 마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거나,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피해자 프레임을 취했었다. 그러나 위 문건을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의 이런 인사 방식에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협조하겠다는 방안을 세웠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 다. VIP보고서 [165]번 문건

이는 BH 설득방안 문건에 담겨진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에 대한 VIP 영향력 확대 방안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만든 것이다.

첫째, 여기에는 사법부가 헌법상 3권 분립되어 있는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즉 문건 2쪽에 의하면,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意中(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화’하고, ‘추천위원회 추천 의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겠다는 세부 공약까지 밝혔다. 청와대에서 사실상 대법원과 같은 3심인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대법관 아닌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상고법원 판사 인사권의 일부를 대통령에게 넘기는 식의 위헌적인 발상까지 추진한 것이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얼마나 부적절한 수단, 방법까지 동원하려 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같은 연장선상에서,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효과적인 협상추진전략' [82]번 문건' 4쪽에 따르면 '상고법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임명 과정에서 VIP 영향력 발휘 여부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이런 한시운영이 상고법원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드러낸 셈이다. 그리고 같은 4쪽에서, 대법원 내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할 경우, 대법원 내 상고법원 판사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처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삼권분립정신과, 대법원장에 의한 통제 확보를 위해 재판의 독립원칙이 침해되더라도 괜찮다는 식의 의사를 드러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VIP 설득을 넘어서 아예VIP 비위를 맞추기까지 한 흔적도 있었다. 위 문건 4쪽 이하에 기재된 이른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사업 추진 계획이 그것이다. 개도국에 한국의 사법제도와 시스템을 이식하자는 내용으로,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전국가적 혁신 아젠다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창조경제의 개념을 끌어다 쓴 것이다. BH 설득방안 문건 22쪽에는,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마련했던 것임에도 마치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 업적으로 포장하게 하자는 식의 발상까지 하고 있었다.

둘째,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내세워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이라서,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BH와 VIP를 설득한다면서 민변 등 진보 인사의 대법원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 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358]번 문건

이는 기조실에서 2015. 8. 6.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회동 내용을 바탕으로 8. 20.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상고심 기능 개편이 필요하나 상고법원안은 상고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위헌 시비, 4심제 논란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창조적 대안을 창출해주기 바란다”는 박 전 대통령 발언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VIP 면담으로 상고법원 입법추진 환경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도래했다”고 반겼다. 이어 “(대통령이) 협상 파트너로 법무부를 지목했기 때문에, (상고법원) 반대세력의 구심인 법무부도 브이아이피의 구체적 지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법무부와의 빅딜”을 검토한 배경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법무부와 빅딜하려고 인권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갖고 있는 검찰 통제 수단을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른바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하는) 영장항고제 도입”,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 “반테러법 등 공안사건에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특례 인정” 등이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를 보임해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하는” ‘당근책’도 제시됐다.

그런데 첫째,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의 핵심으로서 인권 침해의 대표 사례였다. 결국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까지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고, '인권 시계'를 1970년대 유신 시절로 되돌리려 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법원은 영장 기각은 판사의 명령에 해당하고 이미 영장 재청구라는 대체 수단이 있다며 일관되게 영장 항고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런데 상고법원을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를 무너뜨리는 등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려 한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회유책'으로 상고법원 신설에 대응해 검찰 고위직을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했다. “법무부 제2차관(송무차관)직 신설해 법무부 조직과 기능을 확대”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증설 가능” “법무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법무부와의 협상 중재자로는 “브이아이피 신임이 두터우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찰 대선배이자 동향 선배”인 검찰총장 출신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를 지목하기도 했다.

셋째, 법무부 압박 방안으로 <조선일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12쪽). 문건에는 “주요 언론을 활용한 협상 압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 미치고, BH 인식 환기시킬 수 있는 메이저 언론사 활용→조선일보 1면 기사 등”이라고 나온다. 행정처가 비공개한 문건 제목 중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은 이 보고서 이후인 2015. 9. 20. 작성되었는데, 위와 같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미공개된 410개 중에는 조선일보 활용 언론전략 문건이 여러 개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론 조작의 의혹이 드러난 것이며, 또한 특정 언론을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 언론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015. 1.까지만 해도 상고법원에 비판적이었다. 당시 정권현 조선일보 특별취재부장은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한 상고법원 판사가 최종심을 맡게 되면 국민주권을 재재위임하는 것이고, 국민주권의 원리는 희미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5. 5. 28.자 3면에서 “대법원에 年3만7000건… ‘기다리기 지친다, 졸속재판도 싫다’”라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법원은 언론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는데, 특정 언론을 지목하여 상고법원 입법로비에 활용키로 한 것은 명백히 언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판거래 의혹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제목에 등장하는 10개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은, 2016. 4.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의원이 되었다.

또한 일제시기 조선일보의 전 사장이었던 방응모에 친일반민족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고등법원 판결이 2011. 12. 선고되었음에도 2015년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결국 2016. 11. 9. 에서야 선고되었는데 그나마도 3가지 행위 중 1가지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지은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

## 4. 평가

### 가. 재판거래 의혹의 아킬레스건, 상고법원 - 덮어두고 싶은 고위법관들

현직 대법관 13명은 2018. 6. 15.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방침이 결정되자마자 2시간 30분만에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여 판사 사찰은 있을 수 있어도, 재판거래는 근거가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는 각급 법원장 간담회,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에서 나온 의견과 대체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재밋는 현상은, 이러한 대법관과 고위법관들 중 상당수가 법원행정처 출신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판사 사찰에 적극 가담했던 법관들로서 이해관계 당사자이고, 향후 수사 대상인 경우마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렇지 않은 나머지 고위법관들 역시 대체로 당시 상고법원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그 주축인, 지방법원 소속 일선 판사들이 대체로 2015년 당시 상고법원에 비판적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한마디로 재판거래 의혹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은, 상고법원 관련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상고법원 관련 문건들도, 사심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의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싶은 것이다.

특조단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상고법원 관련 문건들을 적당히 덮어두려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만큼 이들에게 상고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고법원이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길래, 사상 유례없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상고법원에 올인하고, 나아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나자 역시 한목소리로 이를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

#### 나. 상고법원에 올인한 이유

상고법원은 고법부장 이상의 고위법관들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모두 원원하는 방안이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들로서는 관문이 매우 좁은

대법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상고법원 판사로라도 임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상고법원은, 당시 고위법관들 대부분이 상고법원 찬성의견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고, 지금에 와서는 고위법관들이 상고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면 이를 부정하고 수사도 덮어 두자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위법관들에 대한 더 높은 승진, 지위에 대한 열망을 활용하여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데,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까지 가지게 되어 더더욱 고위 법관들에 대한 통제권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관통제 수단으로 가장 강력하게 활용했던 것이 고법부장 승진제도였다. 그래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사태 이후 소장판사들이, 근본 원인인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0. 12.경 법관 이원화 제도(경력 10년차 정도때 미리 고등법원 판사를 선발하여, 고등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함)를 도입하여 7년여 정도의 과도기를 거쳐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도록 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으로서는 2011. 9. 취임한 이후 ‘법관 통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어했다. 그래서 위 제도를 뒷받침하기위한 법원조직법 제27조(고등법원 부장판사 규정)의 개정을 계속해서 미루었다. 나아가 2015. 9.경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법원 내부 통신망에 ‘당초 25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고법부장 직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고법원 도입을 필수적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고법원 판사를 발탁인사

할 수 있게되면,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유지할 명분 역시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불과 10여년전까지만 해도 고법 부장들의 대법관에 대한 열망을 활용해서, 고법부장 승진 이후에도 고법부장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늘면서 고법부장 자리는 조금씩 늘었지만, 대법관 숫자는 13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대법관 제청되는 비율이 종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평생 법관 제도의 도입과 변호사 시장 위축으로 고위법관들이 사직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해지기도 했었다. 그러다보니 고법부장 중에는 예전과 달리, 대법관이 되겠다는 마음을 비우고서 이른바 소신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불만스러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고법원 제도 도입이었다.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통해, 고법부장들에게 ‘이게 출세의 끝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고법부장들까지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고법부장들의 더 높은 승진과 자리에 대한 욕망을, 상고법원 제도 도입에 활용한 셈이다.

셋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러한 상고법원안을 자신의 임기와 겹치는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했다. 그 이유는 자신과 국정철학이 유사하기 때문에 VIP의 협조를 받기 쉬울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마침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대로라면 2017. 9. 후임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기 대법원장 역시 그 후로도 6년 동안이나 자신의 일관된 법관 통제권 강화정책을 계승할 것이 분명했던 상황이었다. 그러하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설령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무리수가 생기더라도 후임 대법원장에 의하여 문힐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 다. 재판개입 직권남용죄의 강력한 범행동기, 상고법원 - 파헤치고 싶은 국민

이처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고위법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서 상고법원에 올인하게 된 동기가 분명한 이상,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고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느라 BH에 대한 재판거래 역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적어도 원세훈, 전교조, 통진당 3가지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밝혀진 문건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재판개입으로까지 나아간 정황이 드러났고, 향후 강제수사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더 많은 증거 수집을 통해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상고법원은 재판개입 직권남용죄(판사사찰 직권남용죄 포함)의 범행동기에 해당한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고 확고할수록, 범행의 실행 가능성도 높아진다. 과거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사태에서도,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재판개입의 동기였다. 실제로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촛불집회 재판개입 직후인 2009. 1.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문서로 객관적으로 표출된 바가 없었다. 이에 비하여 상고법원은, 재판거래, 재판개입의 강력한 범행동기였음이 여러 문건에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향후 수사에 있어서도, 재판개입 여부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상고법원 문제도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